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 재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부모급여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7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구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방문재활 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2026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신건강정책관,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인력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및 재생의료정책과의 평가대상 기간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각각 2026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사회복지정책실 및 인구정책실 하부

조직의 소관 및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00. ~ 3.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제3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6조의2제3항제4호 및 제22호”를 “제6조의2제3항제2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제15항, 제16항 및 제14항으로 한다.

제7조제15항제1호 중 “관련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제7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 제24호, 제26호부터 제30호까지, 제3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4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사회서비스 산업의 육성·지원 및 신규 사업모델 개발

34.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35.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36. 사회서비스 분야 규제 합리화에 관한 사항

37. 사회서비스 분야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8.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9.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40.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경영평가 및 업무 성과평가

41.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

42. 시·도 사회서비스원 업무지원 시스템 관련 사항

43.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지도, 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4.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제7조제16항제13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사회서비스 연구개발 기획 및 사업관리·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17.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사항

1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

19.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개선사항

20.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21.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의 수립 및 조정

23.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급·정산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실시

24.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계획 수립·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5.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제17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관련 법인”을 “법령 중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사회복지법인·시설 관련 공통업무지침 마련 및 운영
- 4.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에 대한 지원 및 육성
- 19.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20.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에 관한 사항
- 21.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육성
- 22.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 지원
- 2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 및 육성
- 24.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육성
- 25. 의료분야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
- 26. 민간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27.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제7조제18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부내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 총괄·조정
- 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1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7.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교육기관 지정·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 중 “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를 “아동정책과, 아동보호
자립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제8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복지정책과장”을 “아동정책과장”으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동복지서비스”를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
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보호 체계(이하
“아동보호체계””를 “복지 체계(이하 “아동복지체계””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및 제16호 중 “아동보호체계”를 각각 “아동복지체계”로 하고, 같
은 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부모급여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과장”을 “아동보호자립과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동권리 증진”을 “아동 보호, 자립지원”
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빈곤아동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제11조제10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요양병원 간병지원 및 간병서비스 관리에 관한 사항

제3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추진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⑤ 방문재활 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재활원에 둔다.

제41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866”을 “8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856”을 “86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89”를 “291”로 하고,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35”를 “37”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868”을 “872”로 하고, 일반직 계 “858”을 “862”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89”를 “291”로 하고,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35”를 “37”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218”을 각각 “2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18”을 각각 “220”으로 하며, 간호서기 “30”을 “32”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9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5. 제39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의료기술서기보	1
별표 12 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0]

보건복지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8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6명 (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 관 나급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3.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4.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	5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5. 보건의료정책실 혈액장기정책과	3명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6. 건강정책국 정신건강관리과	4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7.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데이터진 흥과	9명 (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7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8. 보건산업정책국 재생의료정책과	6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2026년 3월 31일까지
9. 보건의료정책실 간호정책과	3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기획조정실) ①·② (생략)	제3조의2(기획조정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책기획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u>제3호까지</u> , 제4호의2, 제4호의3,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9호까지, 제27호 및 제28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③ ----- ----- ----- <u>제4호까지</u>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u>제6조의2제3항제4호 및 제22호</u> 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 <u>제6조의2제3항제22호</u> ----- ----- -----.
⑥ ~ ⑬ (생략)	⑥ ~ ⑬ (현행과 같음)
<u>⑭·⑮</u> (생략)	<u>⑮·⑯</u> (현행 제14항 및 제15항과 같음)
⑯ (생략)	<u>⑭</u> (현행 제16항과 같음)
제7조(사회복지정책실) ① ~ ⑭ (생략)	제7조(사회복지정책실)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 -----.

1. <u>사회서비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u>	1. ----- <u>기본계획</u> -----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5. <u>사회복지시설의 평가 및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u>	<삭제>
6. 삭제	
7. <u>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u>	<삭제>
8. ~ 10. 삭제	
11. <u>사회서비스 교육과정, 교육기관 지정·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u>	<삭제>
12. <u>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육성</u>	<삭제>
13. <u>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에 대한 지원 및 육성</u>	<삭제>
14. <u>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개선사항 총괄</u>	<삭제>
15. ~ 18. (생략)	15. ~ 18. (현행과 같음)
19. <u>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 지원</u>	<삭제>
20. <u>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유통</u>	<삭제>

<u>및 사용내역 모니터링</u> <u>21.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u> <u>및 관리에 관한 사항</u> 22. 삭 제 <u>23. 사회서비스 이용권 중장기</u> <u>전략계획의 수립 및 조정</u> <u>24.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급 ·</u> <u>정산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실</u> <u>시</u> 25. (생 략) <u>26.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u> <u>및 육성</u> <u>27.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u> <u>의 지원 및 육성</u> <u>28. 의료분야 기부문화 활성화</u> <u>추진</u> <u>29. 민간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u> <u>한 사항</u> <u>30.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u> <u>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u> 31. (생 략) <u>32. 사회서비스 연구개발의 총</u> <u>괄 기획 및 사업관리 · 성과</u> <u>활용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25.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31. (현행과 같음) <u><삭 제></u> <u>33. 사회서비스 산업의 육성 ·</u> <u>지원 및 신규 사업모델 개발</u>
---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⑩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4.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36. 사회서비스 분야 규제 합리화에 관한 사항

37. 사회서비스 분야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8.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9.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40.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경영평가 및 업무 성과평가

41.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

42. 시·도 사회서비스원 업무 지원 시스템 관련 사항

43.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지도, 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4.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 12. 삭제	
<u>13.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u>	<u><삭제></u>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u>15. 사회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u>	<u><삭제></u>
<u>16. 사회서비스 연구개발(R&D)</u>	<u>16. 사회서비스 연구개발 기획 및 사업관리·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u>
<u><신설></u>	<u>17.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사항</u>
<u><신설></u>	<u>1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u>
<u><신설></u>	<u>19.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개선사항</u>
<u><신설></u>	<u>20.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u>
<u><신설></u>	<u>21.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신설></u>	<u>22.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의 수립 및 조정</u>
<u><신설></u>	<u>23.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급·정산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실시</u>

<신 설>

<신 설>

⑰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삭 제

4.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새로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타당성 검토

6.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인에
관한 사항

7. ~ 13. 삭 제

14.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대한
지원

15. ~ 18. (생 략)

<신 설>

<신 설>

24.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계획 수립·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5.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1. (현행과 같음)

2. 사회복지법인·시설 관련 공
통업무지침 마련 및 운영

4.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에 대
한 지원 및 육성

<삭 제>

6. ----- 법령 중 사회복지
지법인 및 시설-----

<삭 제>

15. ~ 18. (현행과 같음)

19.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0.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에 관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⑱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6. 부내 일자리 정책 기획·총괄·조정 7.·8. (생 략) 9. 유망 사회서비스분야 및 사업모델 개발 10. (생 략) 11. ~ 14. 삭 제	<u>한 사항</u> 21.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육성 22.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 지원 23.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 및 육성 24.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육성 25. 의료분야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 26. 민간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7.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 -----. 1. ~ 5. (현행과 같음) 6. 부내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 총괄·조정 7.·8. (현행과 같음) <u><삭 제></u> 10. (현행과 같음)
---	--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인구정책실) ① ~ ⑤ (생략)

⑥ 인구정책실에 인구정책총괄과, 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아동학대대응과,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노인건강과,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 및 청년정책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생략)

⑧ 출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7.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교육기관 지정·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인구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자립과-----

-----.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 27. (생략)

<신설>

⑨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의2. (생략)

4. 아동복지서비스 조사·연구
· 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생략)

6. 빈곤아동종합대책의 수립 및 조정

7. · 8. 삭제

9. ~ 13. (생략)

14.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 보호 체계(이하 “아동보호체계”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아동보호체계 관련 조직·인력의 확충과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16. 아동보호체계 관련 조사, 연구, 통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7. (생략)

<신설>

18. ~ 21. (생략)

1. ~ 27. (현행과 같음)

28.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⑨ 아동정책과장-----
-----.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 ----

5. (현행과 같음)

<삭제>

9. ~ 13. (현행과 같음)

14. -----
-- 복지 체계(이하 “아동복지체계”-----

15. 아동복지체계 -----

16. 아동복지체계 -----

17. (현행과 같음)

17의2. 부모급여 운영에 관한 사항

18. ~ 21. (현행과 같음)

⑩ <u>아동권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아동권리 증진에 관한 사업</u>의 기획·총괄 2. ~ 4. 삭제 5. ~ 27. (생략) <u><신설></u> ⑪ ~ ⑳ (생략) 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① ~ ⑨ (생략) ⑩ <u>간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7. (생략) <u><신설></u> ⑪ ~ ⑲ (생략) 제39조(한시정원) ① ~ ③ (생략) <u><신설></u>	⑩ <u>아동보호자립과장-----</u> -----. 1. <u>아동 보호, 자립지원-----</u> ----- 5. ~ 27. (현행과 같음) 28. <u>빈곤아동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u> ⑪ ~ ⑳ (현행과 같음) 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1. ~ 7. (현행과 같음) 8. <u>요양병원 간병지원 및 간병 서비스 관리에 관한 사항</u> ⑪ ~ ⑲ (현행과 같음) 제39조(한시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u>
---	--

<신 설>

제41조(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

템구축추진단) ① 차세대사회보
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
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으며,
별표 12의 정원 중 2명(과학기술
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
·약무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1명, 행정사
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
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사
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
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⑤ 방문재활 서비스에 관한 업
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
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
년 3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
른 한시정원을 국립재활원에 둔
다.

<삭 제>

1명)은 고용노동부, 1명(행정사
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
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국토교통부, 1명(행정사
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
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66</u>	<u>870</u>	+4
·	·	·	
·	·	·	
일반직 계	<u>856</u>	<u>860</u>	+4
·	·	·	
·	·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 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 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289</u>	<u>291</u>	+2
·	·	·	
·	·	·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 통신주사보 · 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u>35</u>	<u>37</u>	+2

	.	.	.	
	.	.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68</u>	<u>872</u>	+4
·	·	·	
·	·	·	
일반직 계	<u>858</u>	<u>862</u>	+4
·	·	·	
·	·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 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 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289</u>	<u>291</u>	+2
·	·	·	
·	·	·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 통신주사보 · 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u>35</u>	<u>37</u>	+2
·	·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국립소록도병원 공무원정원표(제36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18</u>	<u>220</u>	+2
일반직 계	<u>218</u>	<u>220</u>	+2
·	·	·	
·	·	·	
간호서기	<u>30</u>	<u>32</u>	+2
·	·	·	
·	·	·	